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는 '25.6.24(화), '25년 제2차 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

**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 및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의신청인)이 인권 및 노동권 위반 등을 사유로 니토덴코(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일본 모기업) 및 국내 기업(한국옵티칼로부터 부품 구매기업)을 상대로 '24년 10월 한국NCP에 제기한 이의신청사건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한국옵티칼과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경우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4.10.23)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진 (044-203-4090)
	해외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위민이 (044-203-4095)

참고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이의신청사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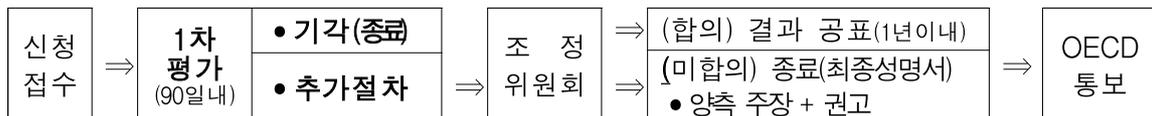
□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1976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 가이드라인 위반 피해자·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NCP)에 이의 신청 제기,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

□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NCP, National Contact Point for RBC)

- OECD 가입국(38개),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국가(14개) 등 총 52개국에 설치, 한국은 '01년에 산업부에 설치·운영 중

※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개요

- 접수일 : 2024. 10. 23.
- 이의신청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피신청인 : 니토덴코, 국내 거래기업(A사)
- 신청내용 : 니토덴코 및 A사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II. 일반정책, V. 고용 및 노사관계) 위반 및 당사자 간 쟁점해결을 위한 주선 제공 요청
 - *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로 인한 폐업 및 근로자 해고 과정에서 노동권 및 인권 실사 위반
 - ** (이의신청인 요구사항) 해고 근로자(7명)의 니토옵티칼(니토덴코의 평택공장)로 고용승계